##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38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김민전·박상웅·윤한홍

조정훈 • 서지영 • 신성범

최수진 · 김재섭 · 박준태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 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

2 등).

법률 제 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부분 중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대학"을 "대학, 대학병원"으로 한다.

5의2. "대학병원"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업교육기관의 장"을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산업교육기관의 장"을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를 "대학의 장,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장이"로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

법」 제15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겸직을 하고 있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의 산학연협력계약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주체 및 연구 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하여 상호 협약(이하 이 조에서 "상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수 있다.
  -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의 상호협약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한 상호협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학교규칙(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의 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명"을 "학교명 또는 대학병원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편입한다"를 "편입하고, 대학병원에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 귀 속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그 산학 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립 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원과 학생"을 "교직원과 학생, 대학병원의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한다.

4의2. 대학병원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제28조제3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 원의 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설립·경영자는"을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생"을 "학생, 대학병원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그 대학의"를 "그 대학 또는 대학병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행위 외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5제1항 중 "대학"을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학"을 각각 "해당 대학 또는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전단 중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을 "대학의 교직원, 대학병원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설립·경영자는"을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으로, "교지(校地)"를 "교지(校地)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로, "교 지의"를 "교지 또는 대학병원 부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의 설립·경영자는"을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으로, "대학의 교지"를 "대학의 교지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로, "대학과"를 "대학 또는 대학병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지"를 각각 "교지 또는 부지"로, "설립·경영자"를 "설립·경영자 및 대학병원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 중 "산업교육기관은"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은"으로,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산업교육기관"을 각각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대학병원"이란 「국립대
	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
	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
	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
	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
	과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
	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
	학교치과병원을 말한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	6 <u>산업교</u>
<u>기관</u>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육기관 및 대학병원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	
의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자회사(子會社)"란 <u>대학</u> 또	9 <u>대학</u> ,
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	<u>대학병원</u>
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 저 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 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

   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u>산업</u>
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
의 장
<u>이 경우 「국립</u>
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 제12조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겸직을 하고 있는 산업교
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
의 산학연협력계약은 산업교육
기관의 장이 체결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병원의 장이 체결할 수 있다.
2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 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③·④ (생 략)
-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u>대</u> 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ㅣ 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u>산업교</u>	1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		

- ③·④ (현행과 같음)
- 학의 장,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 또는 대학병원의 장이-----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 병원의 상호 협약) ① 산업교 육기관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에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및 연구 수행,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 등에 대하여 상호 협약(이하 이 조에서 "상 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 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의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저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 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 당 <u>학교명</u>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 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

상호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
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한 상호협약은 산학협력단
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학교
규칙(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병
원의 정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학 또는 대학병원
②・③ (현행과 같음)
4
학교명 또는 대학병원명
(5)

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 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 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26조(정관) <u>대학의 장</u>은 산학협 제 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 제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 귀속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 귀속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 귀속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은 해당 대학병원의       회계에 귀속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회계에 귀속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⑥ (현행과 같음)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⑦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을 두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관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u>수 있다.</u>
⑧ 제1항에 따른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립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6조(정관) <u>대학의 장 또는 대</u>
학병원의 장
1. ~ 12. (현행과 같음)
]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 1. ~ 3. (생 략)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신 설>

- 5. 6. (생략)
-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 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 8. (생략)
- ② (생 략)
-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 ③ 대학 또는 대학병원-----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 로 둘 수 있다.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 ② (생략)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 | ③ ------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 <u>의 장</u>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u>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u>----

- 1. ~ 3. (현행과 같음)
- 4. 대학 또는 대학병원-----

4의2. 대학병원의 연구 및 개발 에 관한 업무

- 5. 6. (현행과 같음)
- 7. ------------------교직원과 학 생, 대학병원의 의료인(「의 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의 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 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직원-----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④ ----대학 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 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 으로 정하다. ⑤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제30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 ----대학 또는 대 연도에 따른다. 학병원----.. 제31조(수입) ① (생 략) 제31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 ② -----설립·경영자 또는 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 대학병원의 장은-----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 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 제32조(지출) ① -----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학의 시설 · 운영 지원비 3.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4. ------

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u>학생</u>에 대한 보상 금

5. ~ 8. (생략)

② (생략)

-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② (생 략)
  - ③ <u>대학의 장</u>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u>그 대학의</u>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 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u>대학의 장</u>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 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 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 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 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

<u>학생,</u> 대학병원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u>장</u>
그 대학 또는 대학병
원의
④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u> 장</u>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순영) ①

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 2. 3. (생략)
- ②·③(생략)
-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지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u>대학(제36조의2제1항</u>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 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u>대학 또는 대학병원</u>
<u>다만,</u>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
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
료・조산・간호 등 의료행위
외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세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u> </u>

### ② (생 략)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
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
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
른 업무와 <u>대학</u>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u>대학</u>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 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 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b>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u>해당</u> 대학 또는 대
학병원
<u>해당 대학 또는</u>
<u> 대학병원</u>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대
학병원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
· 

#### ② (생략)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 저 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 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 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 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u>대학의 설립·경영자는</u> 제1 항에 따라 <u>대학의 교지</u>를 사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u>대학과</u>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

② (현행과 같음)
베37조(협력연구소) ① <u>설</u>
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u>장은</u>
교지(校地)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
<u>교지 또</u>
는 대학병원 부지의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병원의 장은
-대학의 교지 또는 대학병원의
부지
대학 또는 대학병원과

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교지</u>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 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 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 의 <u>설립ㆍ경영자</u>에게 기부하거 나 <u>교지</u>를 원상회복하여 되돌 려 주어야 한다.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 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 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 동 활용 등) ① (생 략)

	③	<u>부</u>
	<u> </u>	
	설립·경영	자
	및 대학병원의 장	
	교지 또는 부지	
제	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1
	대학의 장 또는 대학병원의	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
•	동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
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원은산업교육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	<u>병원,</u>
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	
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	
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생 략)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원 등)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	② <u>산</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② <u>산</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진할 때에 그 <u>산업교육기관</u> 으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진할 때에 그 <u>산업교육기관</u> 으 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진할 때에 그 <u>산업교육기관</u> 으 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 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 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산</u>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 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 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 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 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 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 

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	-산업교육기관, 대학병원,
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